

## 충북청주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계약직원 모집 공고

청주시장애인체육회의 충북청주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함께 근무할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4년 2월 1일

청주시장애인체육회장

### 1. 모집개요

- 채용부문 :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인력(계약직)
-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	인원	주요업무
운동처방사	2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체력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 상담 제공</li><li>· 체력증진교실 계획 및 운영</li><li>· 측정데이터 관리 및 분석, 월별 실적보고</li><li>· 찾아가는 체력측정서비스 운영</li><li>· 기타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관련업무 등</li></ul>

### 2. 근무조건 및 보수

- 고용형태 : 계약직
- 근무시간 : 8시간/일, 40시간/주(월~금 : 09:00~18:00)
  - ※ 센터 운영에 따라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가능
- 근무장소 :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 내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측정실

□ 계약기간 : 채용예정일 ~ 2024. 12. 31.

※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 및 성실여부에 따라 재계약 가능

□ 보수내역 : 기본급 2,912,025원 \* 단, 자격증 미소지자 : 2,647,575원

※ 정액급식비, 초과근무수당, 명절휴가비, 퇴직적립금, 4대보험(의무가입) 별도

### 3. 응시자격

□ 자격요건(채용 공고일 기준)

○ 기본요건

- 응시연령 :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(만 60세 이상 응시불가)
- 성별, 신체조건, 용모, 학력 등 제한 없음
- 공고일 현재 응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한민국 거주자
-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본회 사무국 업무규정 제14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○ 자격요건

- 『국민체육진흥법』에서 정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
(구 1급 생활체육지도자)
  - 체육분야 운동처방 전공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
- ※ 상기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자

### 4. 전형 및 평가방법

□ 1차 : 서류전형

○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 확인

□ 2차 : 면접전형(1차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함)

○ 면접진행 :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진행

○ 면접평가 : 배점기준에 따른 정성평가 실시

- 전문지식과 응용능력(직무수행계획) / 특수체육 전문지식
-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
-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-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및 성실성, 책임감

□ 합격자 결정

- 각 위원 평가점수 합산 후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
- 심사위원의 종합적 평가를 통해 6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
- 동점자 발생 시 면접항목 중 ‘가’ 항목 고득점자로 결정
  - ※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자가 고득점자인 경우 채용하지 않음
  - ※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함

□ 최종합격

- 채용 결격심사(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서) 후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확정
  - ※ 합격 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, 신원조회 및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생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- 최종합격자 외 평가점수 합산 후 60점 이상인자에 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적용 함
  - ※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,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, 임용 3개월 이내 퇴사 시 예비합격번호 순으로 총원

## 5. 응시접수

- 접수기간 : 2. 13.(화) ~ 2. 14.(수), 09:00 ~ 18:00까지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※ 주말 및 점심시간(12:00 ~ 13:00)은 접수 받지 않음
- 접수처 :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총무팀 채용 담당자
  - 주 소 :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33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내 사무실
  - 연 락 처 : 043) 211-4606
- 기타사항 : 모든 제출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

## 6. 채용일정

구 분		일 정	비 고
채용공고		2. 1.(목) ~ 2. 14.(수)	홈페이지 게재
원서접수		2. 13.(화) ~ 2. 14.(수)	방문접수
1차	서류전형 및 발표	2. 15.(목)	홈페이지 및 개별통지
2차	면접전형	2. 20.(화)	장애인체력인증센터
	합격자 발표	2. 21.(수)	홈페이지 및 개별통지
채용등록(서류제출)		2. 22.(목) ~ 2. 27.(화)	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
채용계약 및 채용 예정일		3. 4.(월)	계약 및 임용

※ 응시 현황 및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

## 7. 제출서류

제출서류		
· 지원서	1부	[[붙임 1]]
· 이력서	1부	[[붙임 2]]
· 자기소개서	1부	[[붙임 3]]
· 응시자격 결격사유 확인서	1부	[[붙임 4]]
·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	1부	[[붙임 5]]
· 직무수행계획서	1부	[[붙임 6]]
· 주민등록등본	1부	
· 자격증 사본 또는 석사학위 이상 졸업(학위수여)증명서	1부	
※ 자격증 미소지자는 운동처방 전공 관련 여부 확인자료 제출		
· 최종학력증명서(해당자)	1부	
· 경력증명서(해당자)	1부	

## 8. 유의사항

- 지원서는 접수 마감 기한까지 모든 작성을 종료하고 최종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인정함
- 지원서 허위 기재, 기재 착오 누락, 소정 양식 미 준수, 구비서류 미 제출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,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때에는 임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함
-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,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지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- 합격자 통지 후 미등록 및 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, 기타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차득점자(예비합격자 고득점 순번)로 합격자를 결정함
-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
- 제출된 서류는 『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4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, 청구기간 경과 후 『개인정보보호법』에 의거 파기됨

## 9. 결격사유

###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업무규정 제14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 한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 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- 6의 2.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『형법』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6의 3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6의 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한다)
    - 가.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『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9. 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